

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6. 18(토)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년 6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9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2005. 6. 16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- 읍·면·동 관할구역내에 현장 민원실 설치를 통한 주민편익 도모

나. 주요골자

- 읍·면·동 관할 구역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주민등록, 인감, 호적, FAX민원 등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민편익 도모 (안 제20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해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읍·면·동장이 관할 구역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FAX 민원 등 일부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,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

- 공무원 정원과 예산이 수반되고, 현장민원실 설치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민원실 설치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